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25 선고 2016가단5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청구]

전 문

원고A

피고B

변론 종결 2016. 4. 27.

판결 선고 2016. 5.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64. 12. 4. 접수 제49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원고는 경기도 포천시 C 대 450㎡(이하 이사건 토지라 합니다.)에 대하여 전소유자 D 와 2002. 11.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에 2002. 12. 2. 접수 제5128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적법한 소유자입니다.

피고는 1964. 12. 4.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접수 제4968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가등기관자입니다.

그러나 위 피고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인지는 원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피고는 1964. 12. 4. 이사건 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고 나서 근51년동안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피고 명의로 본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으며 또한 법원에 소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사건 토지를 피고가 점유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원고소유의 이사건 토지는 피고의 가등기경료 후 소유권이 E 에서 F 로, 다시 G 로, 다시 D 로, 다시 원고명의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의 가등기는 이미 10년이상 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해 피고가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등기하고자 본 소송을 제기합니다.

판사채성호

별지